

<p>○企劃管理室長 金義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反對로 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執行部署에서 그런 事業計劃에 대한 變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豫算問題라든지 職制問題라든지 法制問題라든지 이런 問題가 提起가 되면 저희 委員會에다 附議를 하고, 또 財務經濟委員會하고 生活環境委員會하고 意見이 다를 경우에는 그 調整節次를 밧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p> <p>○鄭興鎭委員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의 固有業務가 이런 條例를 改正하고 通過하고 하는 우리 所管 業務에 대해서는 좀 配慮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委員會끼리 서로 背馳되는 意見을 갖거나 相衝되는 일이 없는 것이 事前 調律이 아닌가</p> <p>○企劃管理室長 金義在 앞으로는 만일에 저희 財務經濟委員會하고 執行部署를 管轄하는 委員會의 意見 相衝이 있으면 제가 調整節次를 한번 밧아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決定이 되기 전에.</p> <p>○鄭興鎭委員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問題에 대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소위 김빠진 뭇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p> <p>○企劃管理室長 金義在 네.</p> <p>○委員長 李聲九 이 問題는 지금 우리 鄭興鎭委員 말씀대로 條例가 先 改正된 후 豫算이 뒤따라서 決定되는 것이 手順인데, 條例를 改正하지 않고 豫算이 먼저 決定되어서 아마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執行部署에서는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注意를 당부합니다.</p> <p>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더 안 계시면 質疑 答辯을 終結합니다.</p>	<p>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勤勞者厚生施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p> <p>○鄭興鎭委員 잠깐요, 委員長님. 異議는 없는데, 앞으로 이 計劃에 대해서 會議가 끝난 뒤에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施設에 대한 後續措置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委員長 李聲九 계속해서 議決에 들어가겠습니다.</p> <p>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報告)</p> <p>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로 하고, “직업안정법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의”로 한다.</p> <p>제4조중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근로자회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한다.</p> <p><별표> 근로자후생시설 명칭중 시 직영관의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을 삭제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회관장이 행한 행정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근로자회관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p>
--	---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근로자후생시설의 사용료등의 사용요율란중 근로자회관란을 삭제한다.

○委員長 李聲九 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所管 案件處理를 모두 마치고 停會한 후 午後 2시에 續開하여 財務局所管 案件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21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聲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新任 財務局長으로부터 新任人事를 듣고 財務局 新任幹部를 紹介받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新任人事 및 財務局 新任幹部를 紹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지난 12月 7日 發令에 의해서 文化觀光局長으로 在任하다가 財務局長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孫長鎬입니다.

赴任 즉시 李聲九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림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赴任 이후에 所管業務의 파악과 各種 行事場에 參與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느라고 미리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돌아보건대 委員님들께서는 우리 市政發展을 위하여 不撤晝夜 헌신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行政監査 때는 監査活動을 통하여 業務의 미흡한 部分을 指摘 補完토록 함으로써 우리 市 行政의 先進化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니다. 그리고 금년도 追加更正豫算案의 審議結果 95年度 豫算案 審議 議決은 우리 千百萬 서울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해서 市民이 낸 稅金을 有效適切하게 使用하라는 뜻으로 이를 검히히 받아들여 한 푼의 豫算이라도 아껴쓰는 節約行政을 몸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財務局所管 事項 審議案件도 行政의 효율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事案들이오니 配付해 드린 資料를 檢査하시고 議決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幹部紹介: 會計課長 林綵瑾)

3.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4.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5.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7. '94市有財產管理計劃下半年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8. '95市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2分)

○委員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94市有財產管理計劃下半年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 그리고 議事日程 第8項 '95市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서울特別市長을 代理하여 財務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